

충청남도 고시 제2016 - 274호**홍성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와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홍성 옥암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일원
- 면 적 : 기정 - 237,553m² / 변경 - 236,928.0m²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 행 자(제안자) : 홍성군수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기 정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6(환지처분일)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9(환지처분일)
-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증감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237,553	236,928.0	감) 625.0	100.0	
주거용지	113,433	113,316.5	감) 116.5	47.8	
단독주택	67,208	67,081.7	감) 126.3	28.2	
근린생활시설용지	6,045	6,043.0	감) 2.0	2.6	
공동주택	27,635	27,635.0	-	11.7	
준주거시설	12,545	12,556.8	증) 11.8	5.3	
상업용지	14,219	14,425.2	증) 206.2	6.1	
근린상업	14,219	14,425.2	증) 206.2	6.1	
도시기반시설용지	107,673	107,017.2	감) 655.8	45.2	
공원·녹지	24,119	23,895.9	감) 223.1	10.1	공원녹지율 10.2%
어린이공원	3,198	3,207.9	증) 9.9	1.4	2개소
소공원	1,142	1,189.6	증) 47.6	0.5	1개소
완충녹지	4,666	4,631.5	감) 34.5	2	
경관녹지	15,113	14,866.9	감) 246.1	6.2	
하천	25,597	25,399.1	감) 197.9	10.7	도로중복면적 916.5㎡제외
공공공지	320	317.6	감) 2.4	0.1	
유수지	3,051	3,051.1	증) 0.1	1.3	
주차장	3,470	3,453.2	감) 16.8	1.5	
도로	51,116	50,900.3	감) 215.7	21.5	
기타시설용지	2,228	2,169.1	감) 58.9	0.9	
종교용지	2,228	2,169.1	감) 58.9	0.9	

※ 확정측량에 따른 경미한 변경(면적 조정)사항임.

7.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 게재 생략

8.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홍성 옥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1107번지 일원	237,553	감)625	236,92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②	홍성 옥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1107번지 일원	237,553	감)625	236,928	

9. 관련도면 : 게재 생략

- 개발계획 평면도 : 1/3,000

10.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관련 지형도면고시도 : 1/1,200

11. 관계도서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홍성군 도시건축과(전화 041-630-19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 열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